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<p>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</p>	보도자료		 <p>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</p>
	배포 일시	2015. 11. 13(금) 총 4매(본문 3, 붙임 1)	
	담당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기금과장 김홍목, 사무관 유종우, 주무관 김길중 (☎ 044-201-3351, 3343) 산업입지정책과장 윤의식, 팀장 오세정, 사무관 정송이 (☎ 044-201-3681, 3663) 	
2015년 11월 1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11. 15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산업단지 근로자도 ‘내 집 마련’ 쉬워진다

「주택공급규칙」 및 「산업단지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, “16일 시행”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,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(월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- 이와 함께,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「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을 제정(국토부고시), 이 날 함께 시행한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
 -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,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*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(세부기준은 아래 별도 자료 참조)

*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특별공급

☞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(15.7.30)에 포함된 “산단 규제개선 방안” 후속조치

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

-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,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

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

-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%, 중도금 60%이 상한이나 (나머지 금액은 잔금(20%))
 -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%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%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*

현 행(가능한 사례)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약금 20%, 중도금 60%, 잔금 20% · 계약금 10%, 중도금 60%, 잔금 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약금 10%, 중도금 70%, 잔금 20% ※ 계약금을 10% 이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%까지 받을 수 있음

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

-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.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~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('15→'18)

□ 「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(☞ 세부 내용은 별첨 참고)

- (청약자격)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*, 연구소, 병원,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 부여 (동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)

* ('입주기업'의 요건) 해당 산단에 입주(예정)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,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

-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·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○ (공급비율 및 적용범위)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% (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%) 이내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

-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,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가능

○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, 재생사업과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.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.

*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, 구미 국가산단(확장단지) 등

○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중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, 최근에는 주거·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”라면서, “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제·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“국가법령정보센터”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*에서 찾아 볼 수 있다.

*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(☎ 044-201-3351/3343) 또는 산업입지정책과 정송이 사무관(☎ 044-201-3663, 산단 특별공급 관련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(청약자격)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, 연구소, 병원, 교육기관 종사자로서,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산단 입주(예정)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자

《 특별공급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》

- ▶ (입주기업) 해당 산단에 입주(예정)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,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
- ▶ (연구소)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종사자
- ▶ (병원)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
- ▶ (교육기관) 유치원, 초·중·고·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

* 다만, 시·도지사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입주기업이나,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기관도 포함 가능

* 무기계약자, 1년이상 근무한 수습·견습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며, 파견·휴직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기관장이 판단

- ② (공급비율 및 적용범위)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% (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%) 이내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정

○ 해당 산단 및 인근 산단* 내 건설하는 민영주택** 공급에 적용

* 같은 주택건설지역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) 내의 산단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산단

** 산단형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는 일반 공급절차 적용

- ③ (입주기업에 대한 특별공급) 특별공급 물량이 남을 경우 5년이상*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려는 입주기업에게 공급 가능(이 경우, 입주자는 특별공급 대상자로 한정)

* 다만, 시장 등이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3~5년 범위에서 조정 가능

○ 업체 간 세대 수의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협의·조정하고, 조정이 곤란할 경우 시·도지사가 입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결정

- ④ (공급절차) 수요조사, 입주자모집 및 선정(추첨), 부적격자 소명 등